

청소년 인권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방안

노희선*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2. 구별은 있되 차별함이 없다(평등권) |
| II. 청소년인권의 현단계 | 3.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되는가(생존권) |
| 1. 청소년, 그 개념과 범주 | 4. 자기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는가(참여권) |
| 2. 청소년대상 복지서비스 | IV. 결 론 |
| III. 청소년의 권리와 과제 | 참고문헌 |
| 1. 스스로 말미암을 수는 없는가?(자유권) | Abstract |

I. 문제제기

최근 들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이 일고 있다. 더구나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제도가 쉬이 바뀌며, 교육제도와 정책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우리는, 아니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물음이 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의 교육현실을 살펴볼 때, 기성세대인 우리로서는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경쟁우위의 학교학습, 지식중심(성적중심)의 교육, 주입식 교육, 선발과 배출체제의 획일화 등 이러한 기존 교육현장의 행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삶에 대한 도전과 희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은 눈감은채, 주어진 삶에 순응하도록 부추기는 일 즉, ‘알아서 이겨내는’ 경쟁과 경제우위의 논리라 밖에 할 수 없었다.

* 순천청암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문제는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삶을 구가하고 기존 논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에 있다. 우리가 받았던 학습(3R's, 수월성위주교육, 감지), 체벌, 뺨집입장금지조항,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아니라는 논리, 적당한 줄서기 강요 등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기성세대는 아무도 없다.

부모들은 자기자녀들이 매사에 씩씩하고 학교에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부 또한 잘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공부는 잘하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이는 반대의 경우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미래의 교육은 우리시대의 교육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고, 따라서 교육방법이나 형식, 교육내용들이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자녀 중 청소년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교육계와 상담시설 및 기관, 지역사회시민연대 및 청소년단체들의 힘을 모아 그들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기자 노력하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인권의 의미와 청소년의 연령별 구분 및 권리를 고찰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청소년인권의 현단계

권리는 그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인간 존엄성사상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인간존엄성이란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 윤리적 가치나 이념체제보다도 우선되며 개인이 그 생존과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중심적 주체가 된다. 이 말은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 점에서 '권리'는 '인권'과 동의어이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기존의 제도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선, '인권'이 함의하는 애매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은 사실 다의적으로 쓰이는 애매한 말이다. 우선 '인권'은 인간이 지니는 권리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를테면 '청소년의 인권'과 '청소년의 권리'는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둘째,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을 전제하고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적인 의미도 포함한다. 셋째, 최근 동물이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동물도 인간과 같이 모종의 권리를 갖는다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권'은 '동물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반

면, '권리'는 '인권'의 저항적 의미도 없고,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권리'이건 '인권'이건 간에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보장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닌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은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각국의 헌법을 포함한 실정법이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청소년의 개념과 범주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에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의 정의와 중복되기도 한다. 특히 아동협약 제 12조의 의사표현과 참여의 자유에 대한 규정은 10세 미만의 아동보다는 10세에서 18세 정도의 미성년에게 더 적합한 주장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연령적 구분으로 영·유아기의 아동과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제외한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아동의 범주인 13~18세의 아동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를 보는 몇 가지 시각이 있다.²⁾

첫째,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이 연령범주는 법령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로 되어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되어있다. 또한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은 20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의 자로 되어있으며, '형법'에는 14세자 되지 아니한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생활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각각 '18세 미만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우 혼란스럽고 중첩되는 점이 있지만 연령을 분석해 왔을 때 대략 '13~18세의 자'를 공통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인데 어감은 사뭇 다르다는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소년은 미성년자를 의미하지만, 청년은 성숙한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연령대가 낮은 성년층을 지칭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범주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만 하다. 그러나, 10대 후반의 대학생과 20세 이상의 민법상의 성년은 청소년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 사회적·

2) 이송범, 청소년 범죄예방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조선대석사학위논문, 1998.

문화적 참여와 자율 및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사회통념상 중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이와 동등한 연령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13~18세의 연령을 '청소년'으로 보는 적극적인 근거는 학제 또는 학령상의 이유이다. 청소년 문제는 중등 학생들의 문제 또는 중등 학생과 관련된 교육적 문제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문제의 상당 부분은 교육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다수가 학생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중등학생의 학령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우선 과도한 학습량과 대학 입시의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물론 청소년 문제 중에서 학교교육과 무관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문제로 보면, 청소년 문제의 본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이들에게는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학교당국,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들의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입학이 가능한 수준의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에게는 보다 많은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이 주어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교육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즉 교육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아동'의 범주에서 '청소년'을 따로 떼어내서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중등학교 학령의 이들이 쫓아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10~18세의 중등학교 학령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연령대의 청소년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것이다. 즉 아동을 단순한 권리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것이다.

2. 청소년대상 복지서비스 요구

우리나라의 소년비행 발생건수는 매년 약 16만건을 넘으며,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까지 합친다면 많은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가 사법처리의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은 성장과정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하여 주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반면에 교육에 의한 교정 및 개선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³⁾

3) 최평규, 청소년 비행의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논문, 1999.

범행동기도 단순하고 충동적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반 성인 범죄자와는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비행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의 상당부분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유해환경의 영향이 크므로 비행청소년 역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가 그 동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즉흥적이면서 우발적인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시각과 그 처벌은 적극적이며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서비스방향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비행청소년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의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사법기관의 문제점, 검찰에서의 문제점, 법원에서의 문제점, 소년원에서의 문제점, 소년교도소의 문제점에 국한되어 있었다.⁴⁾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저마다 지역적이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사전적 제도와 발생된 범죄의 처벌, 그리고 이후의 교정단계인 사후적 제도를 계획, 추진과정의 분석 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Ⅲ. 청소년의 권리와 과제

1. 스스로 말미암을 수는 없는가?(자유권)

대부분의 청소년 권리침해 문제는 일차적으로 자유권과 관련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의 자유권 문제는 동료 학생으로부터의 폭력, 체벌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기서 폭력의 문제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일체의 폭력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이를테면 방임, 유기, 체벌, 학교폭력, 왕따, 성폭력, 방임 등이 포함된다. 이 문제는 청소년권리의 침해로 보고 뒤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유권 침해문제는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상황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한다. 물론 자유권 침해문제가 학교 상황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방임과 학대는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인 유아기 때부터 일어나며, 성폭력의 경우도 많은 경우 학교 밖에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교육적 상황을 벗어난 침해사례도 많다. 이를테면,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유권, 생존권 및 복지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4) 임종진,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처우실태와 그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1.

목적할 수 있다.

자유권과 관련하여 우선 학문의 자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란 원칙적으로 특정한 제약을 받지 않고,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학문탐구활동이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연구의 자유와 연구의 성과를 발표할 때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까지를 포함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대학생에게 이러한 학문의 자유는 비교적 지극히 당연한 권리로 간주되고 있지만, 중등학생 정도의 신분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학문의 자유는 의무교육 과정에 대한 이수와 학교정책의 권위나 통제로 인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학습거부권, 의무교육과정편성에 대한 참여권 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선교계학교의 종교교육과정의 의무이수에 반발하여 학교박 1인시위를 벌였던 고등학생의 예는 이를 잘 말해준다.

둘째,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 및 양심·신념·지식·경험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지칭한다.⁵⁾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물론, 특정한 표현의 수단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청소년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표현의 기본적인 자유를 포함하여 신체와 용모, 그리고 복장에 관한 자유까지 쟁점이 된다.

특히 학생 신분을 지닌 청소년의 권리 중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중요한 권리이다. 이는 청소년의 재학 기간 동안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교육상황에서 청소년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는 '음성서클의 조직'이나 '교육목적 외의 일'이라는 교육적 목적⁶⁾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2. 구별은 있되 차별함이 없다(평등권)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동기는 2000년 통계에도 나타나 있듯, 우발적인 범죄가 27.1%로서 그 비중이 제일 크고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의 범인성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은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방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대검찰청, 2000).

청소년이 향유·행사하는 평등권은 헌법이나 기타문서에 보장된 범주처럼 폭넓

5) 교회에서 실시되는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은 사실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프로그램은 많이 있다. 어느 교회의 인터넷 사이트는 청소년을 위한 교회인 것 같은 인식을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과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이다. 청소년의 평등권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교육상의 동등한 권리를 받을 권리, 동등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 동등한 교육기회에 접근할 권리, 性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업부진으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평등권은 청소년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청소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구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체의 차별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에는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의 마음과 행위를 야기하는 편견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⁶⁾ 또한 모든 청소년의 개인차 및 개성존중, 문화의 차이 인정,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보장과 같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의 정책적 배려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해결 노력까지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과 함께 개인차를 존중하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불평등’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화 사회인 현 조류에서 청소년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불평등이 신분질서에서 야기되었고, 산업사회의 불평등이 정치·경제적인 측면의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면, 정보화 사회의 불평등은 정보화사회를 구성하는 매체, 자료, 정보 및 지식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상의 정보 불평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 정보불평등의 문제는 청소년의 평등권을 고려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3.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되는가(생존권)

생존권은 우선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생존권도 기초생활수급권 학생의 문제, 소년·소녀가장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이다. 물론 청소년의 기본생존권 중에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생존권은 생계유지에 따르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결손아동 및 청소년, 장애아동 및 청소년, 소수민 및 원주민이 처한 특정한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천명하고 있다. 이 당위성은

6) 오늘날 지역사회복지관은 일반인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전시성 행사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소수인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치고 있다.

청소년의 생존권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년·소녀가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생존권의 완전한 실현은 무의미 하다.

결식아동이나 결식청소년의 문제는 학교상황에서, 그리고 교육재원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적어도 빈곤과정의 아동과 청소년의 급식해결과 소년·소녀가장의 실질적 지원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재정적 지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부모를 여의었거나 부모가 생활력을 잃고 병환 중에 있는 가정의 맏자녀가 자신의 동생들을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신의 학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아동의 연령이나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지국가로 지향한다는 우리의 목표로 볼 때 국가적인 수치임과 동시에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

4. 자기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는가(참여권)

자기결정권은 참여권과 행복추구권 등 적극적자유권을 말한다. 행복추구권의 요체는 자기결정권에 있으며, 자기결정권은 참여권에 의해 꽃이 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참여권은 정치적 참여의 권리에서 주로 실현된다. 참여권은 정치적인 참정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직접권인 권리를 보장해주시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미성년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가 유보되거나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참여권의 제한이다. 앞서 논의된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범주가 사안에 따라 시비를 달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논리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의 인식능력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은 인정하지만 성인에 비추어 열등하고 비교적 불안정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석하는 시각이다.⁷⁾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의 참여권 제한을 정당시하며 청소년을 성인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권리를 의무화 상관개념으로 이해하여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7) 청소년 전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능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적극적으로 위탁하려고 하므로, 사찰에서 청소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권리와 지위도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의무와 상관관계로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청구권적 권리를 전제로 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주장은 모순이다. 셋째, 청소년의 참여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견해는 권위적 간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명분에 따라 권위적 간섭주의가 합리화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권리주체인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참여권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주도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희망사항이나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각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가 '청소년'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청소년의 참여권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중요성 때문에 강조된다. 청소년의 참여권이 함의하는 교육적 중요성은 주로 10대 연령층의 청소년이 처한 중요한 발달의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데서 찾아진다. 그들 연령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민주적이 삶의 직접적인 체험이다. 청소년에게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자신의 이익이 되는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참여권은 여타의 권리와 따로 떼어 내서 고려할 성질이 아니다. 최소한의 생존적 요건은 실질적 참여의 전제가 되므로, 청소년의 참여권은 복지권, 생존권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적 삶의 방식을 가장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기에 참여권을 신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곧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실행하는 일이다. 적어도 '청소년'을 '아동'과 따로 떼어서 청소년기가 초기 연령의 아동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를 견지하고자 한다면,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민주적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의 참여권을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복지권을 신장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제적인 사회생활과 동일시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은 물론 사회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과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이유로서 '청소년'은 '아동'보다 '성인'이 겪어야 할 실제적인 사회생활에 시간상 더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아동'을 분리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청소년이 초기 아동과 달리 존중되어야 한다는 별도의 근거는 여기서 찾아진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소년'은 명실공히 참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IV.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한계와 과제

청소년이라 하면 ‘문제’가 연상될 정도로 기성세대들은 청소년 자체와 그들의 행동을 일정한 틀 속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평가 역시 극단으로 치우쳐 엇갈리기도 한다. 어떤 견해가 옳은지에 대한 평가는 쉽게 내릴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개념정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정체성(Identity)의 확립이다. 정체성의 확립은 3가지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신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변화라는 세 방향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확립한다. 3가지의 발달적 정체성은 따로따로 존재한다기보다 서로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곧 바로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정체성 확립을 어렵게 만든다.⁸⁾

신체적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정체성의 방향은 사춘기와 관련이 있다. 신체적 조건의 변화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자신의 모습에 적응하도록 한다. 어른스러워진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알맞은 행동, 말씨, 인내, 협동, 관계 등 수없이 많은 발달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체적 조건에 적응을 해야 하는 발달적 과업을 갖게 되는 셈이다.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아동 시절의 가치관을 더 이상 청소년 시기에 맞지 않는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청소년들은 감정적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정서적 불안정은 잦은 외출이나 길거리를 방황하는 등의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느낌과 감정을 갖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야 하는 발달적 과업이 요구된다.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주변인으로서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과제는 인류에게 중요한 숙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공부를 잘하는 청소년들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공부를 못하거나 싫어하

8) 박아청, 아이덴티티의 세계, 1993.

는 청소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이다. 청소년들의 폭력이나 비행은 공부 이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순조롭게 성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현재의 건전한 생활은 물론 미래를 계획. 매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구체적으로 성교육, 가치관 교육, 여가 선용교육, 진로교육, 자아존중감 증진 훈련, 자기표현 훈련, 인간관계 훈련 및 스트레스 대처법 등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과 상담은 청소년들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가족과 부모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과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또래관계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정체성확립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개인의 신념, 가치, 역할 등에서의 안정성과 통일성, 독특성과 연속성 등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사회의 성격과 이념에 따라 한 개인의 정체성은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은 기성세대가 예견하고 매스컴이 보도하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스스로의 행동을 맞추기도 한다. 한사회가 정체성 확립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향과 반항을 확대해석하고 그것을 청소년 다음으로 규정한다면, 그 사회의 청소년은 그에 걸 맞는 본인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되며 그들의 행동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청소년의 인권과 정체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이해의 자세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과 행동에 대한 기본이해와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론 청소년의 일탈행위와 문제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때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시기는 자신의 발견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며, 그 노력의 과정중에서 순응이나 반항행동 등이 외부로 표출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보다 유연한 대처방안을 선택하는 지혜를 모색하여 청소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우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9) 학교선도프로그램에서는 과거 선생님들의 인격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교육만으로는 사실상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을 모두가 인식하는 부분이며,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V. 결 론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전체의 문제이고 책임이다. 우리 청소년 인구 가운데 70만명 이상이 비행불우청소년이다. 법무부 백서에 따르면 매년 약 6~7%의 비행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10% 정도이다. 이렇게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을 올바르게 선도하기위한 복지서비스나 교육-경영학적 마인드는 미약한 실정이다. 사회에서는 이들의 인격과 사회성교양을 위하여 효과적인 관심을 갖는데 미약하고 징계와 낙인쪽을 더 선호하였으며,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교회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비행청소년 복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개선이 시급하다. 소년원은 이념적으로 학교교육을 표방함으로써 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감시와 처벌, 구금에 의한 통제의 기능이 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원의 교육과정은 형기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3~6개월 과정의 단기일 경우에는 정신정화교육, 준법정신과 도의심 함양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빛나간 성격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년원은 이념적으로는 학교교육을 표방함으로써 구금시설이 아닌 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인적자원의 충분한 보완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 교육과정을 전문화시키고 치료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소년교도소의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년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의 종류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직업교육 등 여러 가지가 실시되고 있으며, 직업교육은 작업과에서 담당하고 순화교육은 보안과 소속의 교도관이 담당하는 등 구분되고 있다. 그렇지만 재소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중심적인 학과는 교도과이며 교도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원의 선발문제는 우리나라 공무원모집관이 대학교 등에 주재하여 학교측과 협조하여 교정교육에 적합한 자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범죄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해서는 분류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분류처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규모가 크고 시설수도 작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좀더 발전된 소년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처우 및 관리 분류별에 따른 소년교정시설이 소규모로 건립되어야 하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시설의 개선방안으로 민간인의 참여방안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수행에 민간분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관련 업무와 소년 및 형사사법제도의 정책시행에 있어서 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조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인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갱생보호위원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갱생보호활동을 행정지도형이나 순수한 민간주도형의 갱생보호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민간갱생보호법인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재 갱생보호법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그 설립과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며 각종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청소년 비행의 완화를 위해서는 한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주인공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이들의 선도 문제는 전문가나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며, 온 국민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들은 이사회리의 주인이 청소년임을 자각하여 청소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청소년의 비행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함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경찰청(2002), 경찰백서.
2. 김기태(2000), 인터넷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3.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4. 김준호·노성호 외(2003),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5. 노희선·강만철 외(2002), 한국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6. 박병식(1999),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법규에 관한 연구, 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7. 박진규(2004), 청소년문화, 서울: 학지사.
8. 박태홍(1998), 비행청소년의 보호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영남대 석사논문.
9. 안소동(1997), 청소년범죄의 분석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0. 이송범(1998), 청소년 범죄예방과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11. 이영숙·박경란 외(2000),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12. 이종원 외(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1999),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왕따)실태와 그 대안', 『교육정책토론회자료집』.
14. 한규학(1998),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15. 한상철 외(2003), 청소년지도론, 서울: 학지사.
16. 허남석(1998), 청소년비행의 실태분석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7. Christnan, H. S.(2000), The War Against Bpys, New York: Simon & Schuster.
18. David, B. P,(1999), (ed.), Your Adolescent. New York: HarperResource Pub.
19. John, N.(1999), High Tech High Touch. New York: Random House Inc.
20. Lawrence, J. G(1998), Finding Help When your Child in Struggling in School. New York.

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e Social Welfare Service of Juvenile Rights

Roh, Hee-sun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at changes radically, the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cy shows a tendency to become out-rageous. Organized, intellectual and lower-aged qualitatively together with its qualitative increase to the extent that it may exceed adult crimes, and it is the circumstances that it emerges a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Juvenile Delinquency is developing into one of the most pressing and critical issues. But, there is no explicit measure in any country. Above all, Juvenile Delinquency is resulted from various factor. For example, personality, family relation,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